|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경외투자자가 배당 이윤으로 직접 투자 시 원천소득세 잠정 불징수 정책의 적용 범위 확대 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53호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상무부는 <경외투자자가 배당 이윤으로 직접 투자 시 원천소득세 잠정 불징수 정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에 관한 통지>(재세[2018] 102호, 이하 <통지>)를 연합 발포하여, 경외투자자가 중국 경내 거주기업으로부터 배당 받은 이윤을 경내 직접 투자에 사용할 경우 원천소득세 잠정 불징수 정책의 적용 범위를 외상투자 격려류 항목으로부터 모든 비금지 외상투자 항목 및 분야로 확대한다. 이에 유관 집행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경외투자자가 분배 받은 이윤을 해당 경내 거주기업의 이미 등록한 자본금의 추가납부에 사용하여 실제납입 자본 또는 자본 적립을 증가하는 경우, ‘중국 경내 거주기업의 실제납입 자본 또는 자본 적립의 신규 증가 또는 무상 증가’ 상황에 부합되는 것에 속한다.  2. 경외투자자가 금융 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인민폐 재투자 전용 예금계좌를 통해 재투자 자금을 조달하고, 관련 자금이 이윤 배당 기업의 계좌로부터 경외투자자 인민폐 재투자 전용 예금계좌로 이체된 당일 다시 경외투자자 인민폐 재투자 전용 예금계좌로부터 피투자기업 또는 지분양도측 계좌로 이체된 경우, ‘경외투자자가 직접 투자를 위한 이윤을 현금 방식으로 지불한 경우, 관련 자금이 이윤 배당 기업의 계좌로부터 직접 피투자기업 또는 지분양도측 계좌로 이체되며, 직접 투자하기 전에 경내외 기타 계좌에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통지> 제4조 또는 제6조 규정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 경외투자자는 유관 규정에 따라 세수협정 대우를 향유할 수 있으나, 단지 관련 이윤 지불 시 유효한 세수협정에 적용할 수 있다. 후속 세수협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후속 세수협정에 따라 집행한다.  4. 경외투자자가 <통지> 제3조 규정에 따라 잠정 불징수 정책을 향유하는 경우, <비거주기업 원천소득세 이연 납부 정보 보고표>(첨부)를 기입하여 이윤 배당 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외투자자가 <통지> 제5조 규정에 따라 잠정 불징수 정책을 사후 향유하는 경우, 이윤 배당 기업의 주관세무기관에 <비거주기업 원천소득세 이연 납부 정보 보고표> 및 관련 계약서, 지급 증빙 등 퇴세를 처리하는 기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외투자자가 <통지> 제4조 또는 제6조 규정에 따라 세금을 추가 납부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보고표>를 기입하여 이윤 배당 기업의 주관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이윤 배당 기업은 <통지> 제3조 규정에 따라 경외투자자가 제출한 자료 정보를 심사 확인하고, 하기 결과를 확인한 후 잠정 불징수 정책을 집행한다.  5.1 경외투자자가 기입한 정보가 온전하고 누락된 항목이 없는 경우  5.2 이익의 실제 지급 과정이 경외투자자가 기입한 정보와 부합한 경우  5.3 경외투자자가 기입한 정보에서 이윤 배당 기업과 관련된 내용이 진실되고 정확한 경우  6. 이윤 배당 기업이 이미 <통지> 제3조에서 규정한 잠정 불징수 정책을 집행한 경우, 실제 이윤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 주관세무기관에 하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1 이윤 배당 기업이 기입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보고표>  6.2 경외투자자가 제출하고 이윤 배당 기업이 정보를 추가 기입한 <비거주기업 원천징수 소득세 이연 납부 정보 보고표>  이윤 배당 기업의 주관세무기관은 <비거주기업 원천징수 소득세 이연 납부 정보 보고표>를 받은 후 10근무일 이내, <통지>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투자 받은 기업(이하 ‘피투자기업’)의 주관세무기관 또는 기타 관련 세무기관에 <비거주기업 세무사항 연락공문>을 발송하여 관련 정보를 전달한다.  7. 피투자기업의 주관세무기관 또는 기타 세무기관이 하기 상황을 발견한 경우, 5근무일 이내 <비거주기업 세무사항 연락공문>을 통하여 이윤 배당 기업의 주관세무기관에 피드백하여야 한다.  7.1 피투자기업이 잠정 불징수 정책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관련 사실 또는 정보  7.2 경외투자자가 잠정 불징수 정책을 이미 향유한 투자를 처분한 관련 사실 또는 정보  8. 주관세무기관은 세무관리 중 법에 의거 경외투자자, 이윤 배당 기업, 피투자기업, 지분양도측 등 관련 단위 또는 개인에게 기한 내에 경외투자자의 잠정 불징수 정책 향유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9. 이윤 배당 기업이 본 공고 제5조에 따라 경외투자자가 제출한 자료 정보를 심사 확인하지 않아 잠정 불징수 정책을 향유할 수 없는 경외투자자가 실제로 잠정 불징수 정책을 향유하게 한 경우, 이윤 배당 기업의 주관세무기관은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이윤 배당 기업의 세금 미공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법에 의거 경외투자자에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추징한다.  10. 경외투자자가 기입한 정보가 잘못되어 잠정 불징수 정책을 향유할 수 없지만 실제로 잠정 불징수 정책을 향유한 경우, 이윤 배당 기업의 주관세무기관이 <통지> 제4조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11. 경외투자자가 잠정 불징수 정책을 이미 향유한 것과 잠정 불징수 정책을 향유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 같은 항목의 중국 경내 거주기업의 투자를 부분적으로 처분하면 잠정 불징수 정책을 이미 향유한 투자를 선행 처분한 것으로 간주한다.  경외투자자가 <통지> 제6조 규정에 따라 이연 납부 세금을 추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윤 배당 기업의 주관세무기관은 경외투자자의 세금 이연 납부 책임을 추궁하며 세금 이연 납부 기한은 관련 자금을 실제 수취한 후 8일째부터(8일 포함) 계산한다.  12. 경외투자자, 이윤 배당 기업은 대리인에 위탁하여 본 공고에서 규정한 관련 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나 주관세무기관에 서면 위탁 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13. 본 공고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경외투자자가 배당 이윤으로 직접 투자 시 원천징수 소득세 잠정 불징수 정책의 유관 집행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3호)는 동시에 폐지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별첨: 비거주기업 원천징수 소득세 이연 납부 정보 보고표  국가세무총국  2018년 10월 29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扩大境外投资者以分配利润直接投资暂不征收预提所得税政策适用范围有关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53号  　　根据国务院决定，财政部、国家税务总局、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商务部联合发布了《关于扩大境外投资者以分配利润直接投资暂不征收预提所得税政策适用范围的通知》（财税〔2018〕102号，以下称《通知》），对境外投资者从中国境内居民企业分配的利润，用于境内直接投资暂不征收预提所得税政策的适用范围，由外商投资鼓励类项目扩大至所有非禁止外商投资的项目和领域。现对有关执行问题公告如下：  　　一、境外投资者以分得的利润用于补缴其在境内居民企业已经认缴的注册资本，增加实收资本或资本公积的，属于符合“新增或转增中国境内居民企业实收资本或者资本公积”情形。  　　二、境外投资者按照金融主管部门的规定，通过人民币再投资专用存款账户划转再投资资金，并在相关款项从利润分配企业账户转入境外投资者人民币再投资专用存款账户的当日，再由境外投资者人民币再投资专用存款账户转入被投资企业或股权转让方账户的，视为符合“境外投资者用于直接投资的利润以现金形式支付的，相关款项从利润分配企业的账户直接转入被投资企业或股权转让方账户，在直接投资前不得在境内外其他账户周转”的规定。  　　三、按照《通知》第四条或者第六条规定补缴税款的，境外投资者可按照有关规定享受税收协定待遇，但是仅可适用相关利润支付时有效的税收协定。后续税收协定另有规定的，按后续税收协定执行。  　　四、境外投资者按照《通知》第三条规定享受暂不征税政策时，应当填写《非居民企业递延缴纳预提所得税信息报告表》（附件），并提交给利润分配企业。  　　境外投资者按照《通知》第五条规定追补享受暂不征税政策时，应向利润分配企业主管税务机关提交《非居民企业递延缴纳预提所得税信息报告表》以及相关合同、支付凭证等办理退税的其他资料。  　　境外投资者按照《通知》第四条或者第六条规定补缴税款时，应当填写《中华人民共和国扣缴企业所得税报告表》，并提交给利润分配企业主管税务机关。  　　五、利润分配企业应当按照《通知》第三条规定审核境外投资者提交的资料信息，并确认以下结果后，执行暂不征税政策：  　　（一）境外投资者填报的信息完整，没有缺项；  　　（二）利润实际支付过程与境外投资者填报信息吻合；  　　（三）境外投资者填报信息涉及利润分配企业的内容真实、准确。  　　六、利润分配企业已按照《通知》第三条规定执行暂不征税政策的，应在实际支付利润之日起7日内，向主管税务机关提交以下资料：  　　（一）由利润分配企业填写的《中华人民共和国扣缴企业所得税报告表》；  　　（二）由境外投资者提交并经利润分配企业补填信息后的《非居民企业递延缴纳预提所得税信息报告表》。  　　利润分配企业主管税务机关应在收到《非居民企业递延缴纳预提所得税信息报告表》后10个工作日内，向《通知》第二条第一项规定的被投资企业（以下称被投资企业）主管税务机关或其他相关税务机关发送《非居民企业税务事项联络函》，转发相关信息。  　　七、被投资企业主管税务机关或者其他税务机关发现以下情况的，应在5个工作日内以《非居民企业税务事项联络函》反馈给利润分配企业主管税务机关：  　　（一）被投资企业不符合享受暂不征税政策条件的相关事实或信息；  　　（二）境外投资者处置已享受暂不征税政策的投资的相关事实或信息。  　　八、主管税务机关在税务管理中可以依法要求境外投资者、利润分配企业、被投资企业、股权转让方等相关单位或个人限期提供与境外投资者享受暂不征税政策相关的资料和信息。  　　九、利润分配企业未按照本公告第五条审核确认境外投资者提交的资料信息，致使不应享受暂不征税政策的境外投资者实际享受了暂不征税政策的，利润分配企业主管税务机关依照有关规定追究利润分配企业应扣未扣税款的责任，并依法向境外投资者追缴应当缴纳的税款。  　　十、境外投资者填报信息有误，致使其本不应享受暂不征税政策，但实际享受暂不征税政策的，利润分配企业主管税务机关依照《通知》第四条规定处理。  　　十一、境外投资者部分处置持有的包含已享受暂不征税政策和未享受暂不征税政策的同一项中国境内居民企业投资，视为先行处置已享受暂不征税政策的投资。  　　境外投资者未按照《通知》第六条规定补缴递延税款的，利润分配企业主管税务机关追究境外投资者延迟缴纳税款责任，税款延迟缴纳期限自实际收取相关款项后第8日（含第8日）起计算。  　　十二、境外投资者、利润分配企业可以委托代理人办理本公告规定的相关事项，但应当向主管税务机关提供书面委托证明。  　　十三、本公告自2018年1月1日起施行。《国家税务总局关于境外投资者以分配利润直接投资暂不征收预提所得税政策有关执行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3号）同时废止。  特此公告。  　　附件：非居民企业递延缴纳预提所得税信息报告表  国家税务总局  2018年10月29日 |